

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3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정이유

- 체육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받은 자에게 일정기간(30일)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체육시설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 취소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(안 제6조)
 - 사용허가 취소 등 처분 결과 해당 체육시설에 게시
 - 사용허가 취소 등 처분자에 대하여 30일간 사용허가 금지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의회
- 전 화 : 043)740-3089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| 조례안 내용 | 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

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”를 “영동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“(다음부터”를 각각 “(이하”로 한다.

1. “녹색제품”이란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필 요하다고”를 “필요하다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12월말까지 이를”을 “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(다음부터”를 “(이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산업계”를 “관련 업계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집계하여”를 “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상품”을 각각 “제품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상품이”를 “제품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품질”을 “녹

색제품 품질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”을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하여 「영동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, 제2조제3호, 제3조제3호, 제9조 제목, 제9조제1항, 제9조제2항제1호, 제9조제2항제2호, 제9조제2항제3호, 제9조제2항제4호, 제9조제2항제5호, 제10조 제목, 제10조제1항,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2항제1호, 제10조제2항제2호, 제10조제2항제3호, 제10조제2항제4호, 제10조제3항, 제11조 제목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1항제1호, 제11조제1항제2호, 제11조제1항제3호, 제11조제2항, 제12조 제목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 제목,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제1호, 제13조제3호, 제13조제5호, 제14조제1항, 제15조 제목,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, 제16조 제목, 제16조제1항, 제17조 제목, 제17조제1항, 제17조제2항,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친환경상품”을 각각 “녹색제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<u>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친환경상품”이란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다음부터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.</p> <p>2. “관내기업”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영동군(다음부터 “군”이라 한다)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.</p> <p>3. “자발적 협약”이란 영동군수(다음부터 “군수”라 한다), 공공기관,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| <p><u>영동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녹색제품”이란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</p> <p>2. ----- ------(이하 ----- -----.</p> <p>3. ----- --(이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.</p> |

1.·2. (생략)

3. 군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기업

4. 「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

제4조(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

설치 등)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(다음부터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, 재무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표, 관련 기관·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필요하다고 -----

4. 「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-----

<삭 제>

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
자문·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
같다.

1.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
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
사항
2.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
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
3.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
와 공표에 관한 사항
4.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
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
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
기준의 설정·변경·폐지에
관한 사항
5.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
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
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
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
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
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
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

<삭 제>

<삭 제>

수 있다.

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(관련전문가를 포함한 다)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주사가 된다.

제10조(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, 12월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총

<삭 제>

제10조(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 ① -----

-----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청북도지사(다음부터 “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,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)

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2조(친환경상품 구매의무) 법

제6조에 따른 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

2. 용역과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

3.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

제13조(친환경상품 구매예외) 법

-----(이하 -----
-----.

④ -----
----- 관련 업
계-----
-----.

제11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) ①

----- 집계하여
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
이내에 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녹색제품 구매의무) -----

-----.

1. --- 제품-----

2. -----
----- 제품-----

3. -----
제품-----
--

제13조(녹색제품 구매예외) -----

제6조제5호에 따른 ‘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’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
2.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~ 5. (생략)

제14조(교육)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법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와 교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(포상)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·소비촉진에 기여한 공

-----.

1. ----- 제품이 -----

2. ----- 녹색제품 품질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교육) ① -----

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-----

----- 한
국환경산업기술원-----
-----.

제18조(포상) -----

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,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----- 대하여 「영동군 포
상 조례」에 따라 -----
-----.